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19-163
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일원화 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이사장의 임기 변경(안 제11조5항)

- 이사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임원 등) 및 제6조(이사회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10. 10. ~ 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(2019.11.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되어 있는 이사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임원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 ⑤ 이사장의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 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⑥ (생략)	제11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2년</u> ----- ----- 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이사회 이사장 임기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
없음.

4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이미나 (☎ 3153-8952)